

외국인 저작물 ‘소급보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사업자의 유의사항

신각철
법제처 법제연구관

☐ 데이터베이스와 저작권법

WTO출범(95. 1. 1)이후 지적소유권에 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미국에서 인터넷 정보에 대하여 지적소유권을 인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디지털 정보에 대하여 저작권법상의 보호 대상이 강화 된다면, 컴퓨터 화면에 출력되는 저작물에 대하여 정보 사용료와는 별도로 저작권료 까지도 지급해야 하는 때가 곧 오게 된다.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또는 앞으로 사업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가장 신중을 기하여야 할 사항이 저작권법을 비롯한 지적소유권 분야에 저촉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미 개발해서 운영단계에 돌입하였을때에 법적 분쟁에 휘말린다면 막대한 손실을 보기 때문이다. 특히 앞으로 정보화가 촉진되면 될 수록 지적소유권 분야의 보호장벽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적 검토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가는 크게 손해를 보게 된다.

예컨대, ○○펜팔 데이터베이스는 영문편지글을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영문 펜팔 이용자 또는 영어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이용자로 부터 반응이 좋은 편이라고 한다. 종전에는 외국인 저작물에 대한 소급보호가 없었고 저작권법에서도 규제가 심하지 않았었

다. 그러나 WTO출범이후 지적소유권이 강화 되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도 외국인 저작물을 소급보호함과 아울러 그 보호제도를 대폭 강화 하였기 때문에 저작권분쟁의 소지가 많다.

앞에서 예를 든바와 같이 영문편지 등은 외국인 저작물의 원문(原文)을 그대로 발췌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미국의 신문, 잡지, 소설 또는 시집에서 원문 그대로 발췌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개작·각색하여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컴퓨터 등 전문분야의 월간지도 예외가 아니다. 일본·미국 잡지의 논설을 무단 번역하여 전재하거나 원문을 그대로 이용하는 기사를 종종 보게 된다. 이와같은 외국인 저작물을 월간 잡지에 그대로 이용하거나 번역·각색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제작하여 정보를 전송할 경우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에 저촉되어 분쟁의 소지가 있다.

☐ 데이터베이스 제작에서 유의할 사항

데이터베이스는 현행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저작권법 제6조 편집저작물)로 규정 하였다. 따라서 저작권법과 데이터베이스와는 직접 관련이 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에서 그 소재가 되는 자료(원시 데이터)는 대부분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개정내용을 상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1995. 12. 6 법 제5015호)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운영과 관련있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저작물의 소급보호

종전의 규정은 외국인 저작물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가입한 조약에 따라 보호하되 당해 조약 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것은 보호하지 아니하였다. 즉 1987년 10월 1일 세계저작권협약이 발효되기 이전에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었다.(법 제3조 후단)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있어서도 1987. 10. 1이전 외국인 저작물은 원문 그대로 이용할 수 있었고, 번역해서 마음대로 축적하여 정보 서비스가 가능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정보도 1987. 10. 1 이전 공표된 외국인 저작물이 상당수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두 소급해서 보호해 주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WTO지적소유권 협정에서 베른협약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은 아무런 보상없이 마음대로 이용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만 이용할 수 있고 허락받기 위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경과조치로 1995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것에 한하여 1996년 12월 31일까지 배포·전송이 가능하다. 1997. 1. 1부터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규정하였다. 물론 데이터베이스도 저작권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편집저작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상의 경과조치를 따라야 한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이 있다. 첫째는 1995년 1월 1일 전에 제작된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중에 외국인 저작물이 해당된다. 1995년 1월 1일은 WTO출범일이다. 둘째는 이

미 제작이 완료되어 배포·전송이 시작된것을 의미한다. 물론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는 공중에게 서비스를 개시한 시점이 1995. 1. 1(1994.12.31) 전으로서 이날을 제작이 완료된 날로 보게된다.

(2)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경과조치

저작권법 제5조에 의하여 2차적 저작물 이라 함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화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하며,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도 편집저작물에 속하는 동시에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의 개념에 포함되어 넓은 의미로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원시자료 즉 소재는 상당부분이 원저작물을 번역·변형한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예컨대, 일본어·영어·불어·독일어 등으로 출판된 원문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수록하였을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와같이 외국인 저작물(원저작물)을 번역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과조치를 두었다. 새로 보호되는 외국인 저작물(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서 1995년 1월 1일전(1994. 12. 31)에 작성된 것은 이 법 시행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저작물의 권리자는 1999년 12월 31일 이후(2000년 1월 1일)의 이용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법 부칙 제4조 3항)

위의 경과조치 내용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축적하고 제공하는 소재가 2차적 저작물 이어야 한다. 즉 원문이 아닌 번역·각색·변형된 저작물이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원저작물(원문)의 경우는 1996년 12월 31일까지만 배포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번역된 2차적 저작물은 2000년까지 3년간 더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둘째, 1995년 1월

1일전(WTO출범전)에 작성된 것 이어야 한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데이터베이스가 제작·완료된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의 소재로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을 의미한다. 즉 현재 데이터베이스 제작 작업이 진행중인 것도 해당된다고 본다.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제작되어 정보 서비스를 하기 이전에 데이터베이스 자료로 사용하고자 번역된 원고 상태에 놓여 있어도 이 자료들은 앞으로 계속(2000년 1월 1일)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투자하여 제작된 자료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제작 진행중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자료도 번역된 소재가 작성된 상태일때 보호가 가능하다. 셋째, 원저작권자로부터 배타적인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이용행위를 정지시킬 수가 없다. 이미 저작물을 이용한 신뢰 당사자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의 권리가 보상청구권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의 A컴퓨터 잡지회사가 미국의 컴퓨터월드社로 부터 독점적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B데이터베이스 사업자가 '95년 1월 1일전에 작성된 컴퓨터월드 번역정보의 이용을 금지시킬 수 없다. 즉 종전에 자유이용이 허용되어 번역·이용한 신뢰당사자(B회사)를 일정기간 보호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3) 행위책임 불소급의 원칙

끝으로 이 법 시행(1996. 7. 1)전에 새로 보호되는 외국인 저작물(회복저작물 이라 함)의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즉 저작권법에서 정한 권리의 침해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부칙 제4조 1항) 당연한 규정이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저작물을 데이터베이스의 소재로 원문 그대로 이용하였거나 번역 이용하였다 하여도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소급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 동안

이용하였다 하여도 이 법 시행일전까지만 이용행위가 완료되면 침해행위가 아니다.

그런데 일반 출판물과 데이터베이스와의 외국인 저작물의 복제물, 번역물 등 도서류 등을 1996. 12. 31까지 판매하여 처분하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소재로 이용되는 저작물은 계속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데이터는 삭제해 버리면 해결된다. 삭제해야 할 경우 데이터베이스 사업의 계속성이 문제가 되고 이미 정보 이용자와의 계약관계도 변경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따른다. 따라서 계속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금부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것이다.

☞ 요약 정리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저작권법에서 외국인 저작물의 소급보호에 관하여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그동안 자유이용이 허용되었던 외국인 저작물의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 1995년 1월 1일 전에 제작된 새로 보호되는 외국인 저작물(회복저작물)의 복제물(원문) 1996년 12월 31일까지 책임없이 배포할 수 있다. 그 후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3) 1995년 1월 1일전에 회복저작물 등을 번역·각색한 2차적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복제·배포 등 이용할 수 있다. 2000년 1월 1일 부터는 저작권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하여 요약한다면, ①소재로서 원문이용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배포가 가능하고 ②번역이용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는 2000년 1월 1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다.(저작권법 부칙 제4조 요약) **HC**